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509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중

피 고 1. C

2. 주식회사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유

담당변호사 신흥섭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규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F이 2017. 12. 19. 피고들에 대하여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 또는 채무승인행위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F1) 간의 관계 및 채권

1) F의 관련 사업 진행 경과 및 G보증보험과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가) F은 석산개발을 하는 회사로 군산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서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7. 4. 25. G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군산시, 보증금액 1,686,240,000원, 보증기간 2007. 4. 25.부터2012. 5. 31.까지, 보증내용 산지 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하는 인 · 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 중 931,358,753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H은 F의 위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F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을증액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H은 2008. 9. 22. 2억 원을 원고 A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원고 A 명의의 위 예금을 F의 G보증험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G보증보험에 제공하였다. F은 이를 담보로 군산시를

피보험자로하는 복구비 예치금에 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H이 2009. 1.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직후 F의 위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H이 영위하던 석산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J이 설립되었는데, J의 K조합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억 6,800만 원이 2010. 7. 9. 원고 A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된 뒤 2010. 8. 19.경 G보증보험에게 추가적인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이를 담보로 F은 증액된 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각 보증보험을 모두합쳐서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2) F의 원상복구의무 불이행 및 군산시의 보험금 청구 등

가) 이후 F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산 원상복구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군산시는 2011. 12. 1. G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의복구의무 상실에 따른 대행복구를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G보증보험은 2012. 4. 4.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사전구상권 행사로써 그 담보로 취득한 원고 A 명의의 위 각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환가하여 그 원리금 409,200,260원을 사전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2013. 4. 17. 군산시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86,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보증보험은 군산시에 지급한 돈 중 위 나)항에서 본 변제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하여 F 등으로부터 2014년경까지 총 754,881,247원을 회수하였고, 군산시로부터 2014. 4. 15. 621,299,000원을 반환받았다[이에 따른 2014년경 G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의 원금 잔액은 310,059,753원(= 1,686,240,000원 - 754,881,247원 - 621,299,000원)이었다].

3) 원고 A과 F간 소송 및 원고 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

가) 원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본인이 제공하였던 이 사건 예금이 처분되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2014가합19호로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5. 이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 A에게 401,05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F의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455호]가 2015. 6. 11.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6.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을'이 사건 원고 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103호로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12. 2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A과 F 사이의 이 사건2014가합19 판결에 의하여 F이 원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664,4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하고, 위 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4. 11. 6.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그 판결원리금인 466,766,788원2) 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6690호로 'F이 G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 예치금 반환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2016. 3. 10.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664,421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222호로 'F이 G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 예치금 반환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이 확정된 이후 H은 '이 사건 예금 중 원고 A 명의 I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2억 원은 H의 소유로서 원고 A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H이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예금 중 2억원의 채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취득한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원고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906호로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964호]은 2016. 1. 21.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은 H에게 원고 A이 F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원고 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F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가 2016. 5. 26. 기각되어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H과 원고 A 사이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원고 B과 F 사이의 소송 및 채권 관계

가) 원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 중 931,358,753원에 대하여 F의 부탁에 따라 연대보증한 민법 제442조의 수탁보증인인데, G보증보험이 2013. 4. 17. 군산시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F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26호로 F을 상대로 사전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16. 원고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F은 원고 B에게 371,139,730원[앞에서 본 G보증보험의 구상채권 원금 잔액 310,059,753원과 이에 대한 기 발생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및 그 중 310,059,753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014가합26 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원고 B의 F에 대한 사전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2014가합26 판결에 기하여 그 판결원리금 377,893,086원3) 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11. 6. 이 법원 2014타채6689호로 'F이 G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예치금 반환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F의 복구 의무 이행 및 G보증보험의 공탁 등

가) 그런데 2013년경 이후 F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갱신되었고, F은 석산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G보증보험은 군산시로부터 기존에 지급한보험금 1,686,240,000원 중 복구비 대집행 비용으로 소요된 4,4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받았다.

나) G보증보험은 위와 같이 돈을 반환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의 명의인인 원고 A에게 담보물인 이 사건 예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A 외에도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L, H, M, J이 존재하였다.

이에 G보증보험은 2017. 9. 14. 피공탁자를 원고 A, L, H, M, J으로 하여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412,085,970원(사전구상금 원금409,200,2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관2017년 금제5578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탁금'이라 한다).

다) 또한 G보증보험은 F을 위하여 2017. 9. 8. 이 법원 공탁관 2017년 금제1151호로 294,479,56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탁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 등

가) F은 2008. 2. 11. 피고 C과의 사이에, F이 피고 C에 대하여 322,6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0%로정하여 2007. 12. 31.까지 변제하며, F의 대표이사 N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O합동법률사무소 증서2008년 제660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F의 대표이사 N는 위 제1 공정증서에 기한 F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의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동생 P 소유의 군산시 Q 임야 16,530㎡(이하'R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0.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F과 피고 C, S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S이 피고 C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기로 합의한 뒤, 위합의에 따라 2016. 9. 2. S이 피고 C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S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6. 8. 위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예치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11,210,520원으로 하는 내용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3192)을 받았고, 위 명령은2017. 6. 13. G보증보험에 송달되었다.

2) 피고 D의 F에 대한 채권 등

가) F은 2008. 2. 11. 피고 D과의 사이에, F이 피고 D에 대하여 7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0%로정하여 2007. 12. 30.까지 변제하며, N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O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659호,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D은 2017. 6. 9. 위 제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예치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64,684,931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3191)을 받았고, 위 명령은2017. 6. 13. G보증보험에 송달되었다.

3) 피고 E의 F에 대한 채권 등

가) F에 대하여 설계용역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 E은 F과 함께 촉탁하여 그 설계용역대금에 관하여 2008. 5. 27. 공증인가 T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920호로 '피고 E이 2004. 2. 10. F에게 9,4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31., 지연손해금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E은 2017. 5. 22. 위 제3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예치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2764)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5.24. G보증보험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제2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및 관련 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가) G보증보험이 F을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제2 공탁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U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자신들의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기한 추심권자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각 참가하였다.

나) 배당법원은 2017. 12. 19.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94,475,26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	1순위 배당액	2순위 배당액	배당액 합계
1	원고 A (추심권자)	266,766,788원4)원고 A의 F에 대한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인 466,766,788원에서 H과 원고 A 사이의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H에 양도된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 (2014타채6690)	78,956,867원 (2014타채6690)	1,944,101원 (2014타채 6690)	100,041원 (2016타채 1222)
					9,664,421원 (2016타채1222)
2	원고 B (추심권자)	377,893,086원	111,847,709원 (2014타채6689)	2,753,950원 (2014타채6689)	114,601,659원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	1순위 배당액	2순위 배당액	배당액 합계
3	H (양수권자)	200,000,000원	59,195,424원	1,457,529원	60,652,953
4	V (추심권자)	250,298,200원		2,590,944원	2,590,944원
5	피고 E (추심권자)	200,000,000원		2,070,284원	2,070,284원
6	W (추심권자)	249,279,501원		2,580,398원	2,580,398원
7	X (추심권자)	279,804,090원		2,896,372원	2,896,372원
8	유한회사 Y (추심권자)	88,493,515원		916,034원	916,034원
9	피고 C (추심권자)	511,210,520원		5,291,758원	5,291,758원
10	피고 주식회사 D (추심권자)	2,035,254,931원		21,067,794원	21,067,794원
11	유한회사 Z (추심권자)	77,868,92원		806,055원	806,055원
합 계				294,475,260원	

2) 관련 소송 등의 진행 경과

가) 관련 배당이의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 C, D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의 배당액 중 65,621,236원 및 원고 B의 배당액 중 92,957,72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 E도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의 1순위 배당액 78,956,867원과 2순위 배당액 중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기한 1,944,101원 합계 80,900,968원 및 원고 B의 배당액 114,601,659원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 C, D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7323호로, 피고 E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7700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2) 위 각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F의 복구 의무 이행과 군산시의 G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반환 등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주채무자인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위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 A, B의 F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배당표에서 위 피고들이 이의를 진술한 배당액만큼 원고 A, B의 배당금액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각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다5).

(3) 한편, Z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 C, D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후 이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7717)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3.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F의 피고 C,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F의 대표이사 N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F의 피고 C,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소송사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7년경 피고 C을 고소하였다.

(2) 검사는 2018. 4. 23. 위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7형제16593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결과 이 사건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N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전주) 제308호]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18초재341] 역시 기각되었으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9모2580) 또한 기각되었다.

다) F의 피고 C, D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경과

(1) F은 2018. 9. 3. 피고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합51053, 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 1. 14.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C, D의 F에 대한 각 채권은 모두 2013. 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다음의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 N가 2017년경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 C을고소하면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툰 점, ② Z이 피고C, D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Z이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을

취하하기 전인 2018. 9. 3. F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한 점, ④ F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이 위 피고들에게 교부되기 전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F이 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F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030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위 배당기일 당시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인 2020.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F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해의사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도 당시 채무자인 F의 위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이 2017. 12. 19. 이 사건 제1, 2, 3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래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원고 A은 F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원고 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H과 원고 A 사이의 관련 소송에 따라 H에 양도한 2억 원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금 201,059,0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 ②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 9,644,421원, ③ AA을 통하여 F에 대여한 3,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B은 F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원고 B의 F에 대한 사전구상금 371,139,7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과, ② AA을 통하여 F에 대여한 1억 1,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 F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 3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 위 각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3) F의 무자력 상태 : F은 2016. 12. 31.과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존부

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F이 원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은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6214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2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6.22. 선고 99다36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G보증보험에 이 사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구상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원고 A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F이당초 토석채취허가의 기간 만료 이후 석산 복구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군산시가 G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G보증보험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사전구상권 행사로써 F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원고 A 명의인 이 사건

예금을 처분하자, 그 담보물의 명의자인 원고 A이 그 담보물 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F을 상대로 구상권을 가지게 된 것이었던 점, ② 그런데 F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군산시와 사이의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에 좇은 이행을함으로써 군산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G보증보험의 군산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채무자인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도 소멸하였으며, 이러한 F의 구상금채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G보증보험에 대한 물상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취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A을 통하여 F에 대여한 3,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AA의 계좌 내지 H의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AA 및 H의 각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이 F에 대하여 대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B의 피보전채권 존부

가) 원고 B이 2014가합26 판결에 따른 사전구상금 채권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1)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G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그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한 원고 B의 연대보증채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B은 더 이상 F에 대하여 2014가합26 판결에따른 이 사건 원고 B의 F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B이 AA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시효이익 포기 행위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 C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7. 12. 31.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12. 12.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F이 채권자인 원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서도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다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 N가 2017년경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 C을 고소한 후,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툰 점, ②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Z은 채권자 원고 A, B, 피고 C, D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각각 이의를 진술하고 이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7717)를 제기하였는데, Z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F을 대위하여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Z이 2019. 9. 3.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F은 Z이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 이전인 2018. 9. 3. 피고 C, D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단지 F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C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F이 피고 C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7. 12. 31.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12. 12.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F이 채권자인 원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서도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 N가 2017년경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 C을 고소한 후,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었던점, ② Z이 피고 C, D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F을 대위하여 피고 D의 F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Z이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 이전인 2018. 9. 3.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D의 F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점, ④ F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이 피고 D에 교부되기 이전인 2018. 9. 3.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F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D의 배당액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F이 피고 D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과 관련하여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E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5. 22. 이 법원 2017타채27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F에게 송달되었으나 F이 이를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F과 피고 E 모두 이 사건 배당기일에참석하였는데, F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3 공정증서에 기하여 2,070,284원이 배당되었음에도 위 배당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F의 다른 채권자들도 피고 E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피고 E의 배당액 부분은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피고 E을 상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 E에게 위 배당표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 E이 참석한 배당기일에서 피고 E의 배당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피고 E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F의 무자력 인정 여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6. 12. 31. 및 2017. 12. 31.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다 제5 내지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는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②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시산표는 모두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감사인 등의 회계감사 등을거쳐 그 정확성을 담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다른 증거들을 통한증명력의 보강 없이 위 재무제표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2008. 5.경감정평가사가 감정한 F의 광업권에 대한 평가 금액은 약 613억 원에 이르는데, 2017.12. 31. 당시 위 광업권 및 채굴권의 재무제표상 가치는 총 13억 5,655만 원 수준으로, 위 감정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감안하더라도 무형자산인 광업권 및 채굴권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재무제표상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A이 이익으로 원용한 을다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기 전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F이 피고 E의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F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F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의사란 공동담보의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 E의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빠진다가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E의 채권에대한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F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덕 판사 박상곤 판사 강경민

- 1)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명칭은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도 같다.
- 2)원금 401,05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11.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5,707,754원의 합계이다.
- 3)원금 371,139,730원 및 그 중 310,059,753원에 대한 2014. 9. 12.부터 2014. 11. 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53,356원의 합계이다.
- 4)원고 A의 F에 대한 이 사건 2014가합19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인 466,766,788원에서 H과 원고 A 사이의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H에 양도된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
- 5)피고 C, D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16. 선고 2017가단57323 판결, 2심은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3249 판결, 소송 계속 중인 3심은 대법원 2020다297621호이다. 피고 E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7700 판결, 2심은 전주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11688 판결, 소송 계속 중인 3심은 대법원 2020다284175호이다.